

중 국

[판례 분석]

사업 시행 주체와 설계·시공 주체가 분리된 경우의 저작권 침해 판단

2026. 10. 07.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사업 시행 주체가 타인의 조각 설계도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해당 사업 시행 주체가 공개입찰을 통하여 별도의 업체에 설계·시공을 맡긴 경우에도 실제 제작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설계의 실제 전달, 이용경로, 사업 시행 주체의 정보 파악 가능성, 분쟁 조각과 사건 설계의 높은 유사성 및 독립창작 자료의 부재 등의 요소를 판단하여 사업 시행 주체가 저작권 침해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음.

1. 현황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등 공공영역에 속하는 소재를 조각·회화 등으로 시각화한 경우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재 자체와 창작자가 새롭게 형성한 독창적 표현을 구분하여 저작권 보호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설계·시공이 여러 주체를 거쳐 이루어지는 사업에서는 선행 설계가 실제 사업 과정에 어떠한 경로로 유입되었는지와 후속 설계의 독립적인 창작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침해 입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본문에서는 타인의 설계 도면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조각상을 제작하여 발생한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를 통하여 해당 설계가 사업 관계자를 거쳐 실제 시공에 이용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어떠한 증거구조로 판단하는지 및 조각 분야의 업계 가격 기준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는지를 살펴봄.

2. 판례소개

사건 번호	1심	(2025)新2901民初10091号
	2심	(2026)新29民终1067号

관할 법원	1심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아커쑤시 인민법원 (新疆维吾尔自治区阿克苏市人民法院)		
	2심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아커쑤지구 중급인민법원 (新疆维吾尔自治区阿克苏地区中级人民法院)		
당사자	A 회사		1심: 원고	2심: 상소인
	B 문화관광국		1심: 피고	2심: 피상소인
핵심 쟁점	1심	1. B 문화관광국이 A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2심	1. B 문화관광국이 A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2.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B 문화관광국의 법적 책임		
판결 결과	1심	1. B 문화관광국은 A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 A 회사의 소송을 기각함.		
	2심	1. B 문화관광국은 A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2. 1심 법원의 판결을 철회함. B 문화관광국은 A 회사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150,000위안을 배상해야 함.		
관계 법령	· 저작권법(著作权法) 제11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52조, 제54조 ·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7조			
최종 판결일	2026년 8월 17일			

(1) 사건 개요

A 회사는 2022년 6월경 소속 직원을 통하여 <대당군영(大唐群英)> 조각의 형상과 배치 등을 표현한 설계 효과도와 관련 설계 도면(이하 "사건 설계"라 함)을 작성하고 주택도시농촌건설국(住房和城乡建设局) 측 관계자들과 연락하면서 사건 설계를 제공하였음.

B 문화체육관광파전시관광국(文化体育广播电视和旅游局, 이하 문화관광국)은 해당 지역 문화관광사업인 <실크로드 관광휴양구 건설사업 제2공구(丝路旅游度假区建设项目二标段)>(이하 "분쟁 사업"이라 함) 설계·시공 일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개입찰을 통해 X 건설회사를 대표사로 Y 그룹 회사

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수급 업체를 선정하였음. 그 후 해당 사업의 시공 과정에서 여러 인물상으로 구성된 <대당군영> 조각 작품(이하 "분쟁 조각"이라 함)이 제작·설치되었음.

A 회사는 해당 사업 현장에서 분쟁 조각을 발견하고 그 형상이 사건 설계와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B 문화관광국이 허락 없이 사건 설계를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 문화관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2) 핵심 쟁점

① 원고의 주장

A 회사는 사건 설계가 자사가 독립적으로 창작한 미술저작물이며 관련 자료를 통하여 그 창작 시기와 창작 주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함. 또한 사건 설계가 지방정부 관계자를 통하여 사업 관계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고 분쟁 조각은 전체 배치, 인물의 자세, 복식, 외관 등 핵심 표현에서 사건 설계와 고도로 유사하므로 B 문화관광국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주장함.

② 피고의 주장

B 문화관광국은 A 회사와 위탁창작 또는 협력관계를 체결하거나 사건 설계의 이용 및 권리귀속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A 회사가 제출한 SNS 기록만으로는 상대방의 신원이나 B 문화관광국과의 관련성 및 사건 설계도가 실제로 전달·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항변함. 또한 분쟁 사업은 적법한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업체가 독립적으로 설계·시공한 것이고, B 문화관광국은 구체적인 창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③ 핵심 쟁점

상기한 양 당사자의 주장·항변과 2심 법원이 명시한 쟁점을 종합하면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음.

- a. B 문화관광국이 A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b.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B 문화관광국의 법적 책임

(3) 법원의 판단

1) 저작권 침해 여부

[요약] 분쟁 조각은 사건 설계의 독창적 표현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며 사건 설계가 분쟁 사업 관계자에게 실제 전달되어 시공에 이용되었고 B 문화관광국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건 설계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B 문화관광국이 침해 주체로 인정됨.

① 사건 설계의 저작물 성립 여부

사건 설계는 선, 색채, 명암 및 공간배치 등을 통하여 심미적 의미가 있는 입체조형을 평면적으로 표현한 것임. 비록 공공영역에 속하는 역사적 인물의 형상을 참고하였지만 기존 작품을 그대로 복제한 것은 아니며 인물의 조형 및 그 조합방식에 독자성이 존재하였음. 특히 조각의 조

형, 비례구조 및 공간구성 등은 창작자의 개성적인 선택·판단·배열의 결과이므로 독창성이 인정되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함.

② 사건 설계의 권리 귀속

1심 법원은 A 회사가 사건 설계를 창작하였다는 직접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SNS 대화 상대방의 신원 및 B 문화관광국과의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A 회사가 사건 설계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A 회사는 종전 디자이너의 저작권 귀속 확인서와 사회보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디자이너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A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건 설계를 제작하였으며 이것이 직무저작물이라는 점이 인정됨.

또한 A 회사와 B 문화관광국 사이에 서면계약이나 별도의 저작권 귀속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건 저작권이 A 회사에 귀속된다고 인정됨. B 문화관광국이 사건 설계의 이용이나 권리 귀속에 관하여 A 회사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B 문화관광국이 적법한 이용허락을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하지 못하므로 면책사유가 될 수 없음.

③ 저작권 침해 여부

우선 접근 가능성과 관련하여 A 회사가 관련 사업의 효과도와 시공도면을 전달받아 사건 설계를 작성한 후 2022년 6월 24일 사건 설계를 외부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됨. 또한 분쟁 사업의 건설주체가 B 문화관광국이고, A 회사의 설계도가 사업 초기 관계자와의 연락을 거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실제 시공 관계자에게 전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B 문화관광국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건 설계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됨.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서는 분쟁 조각과 사건 설계를 비교한 결과 전체 조형, 공간배치, 비례구조, 세부처리 및 예술적 스타일 등 독창적 표현이 고도로 유사함. 비록 일부 인물의 각도나 자세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일반 관람자가 전체적으로 관찰할 경우 높은 수준의 전체적 유사성이 인정됨.

B 문화관광국은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분쟁 조각의 전체 설계를 독립적으로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업체의 원본 설계도, 과정도 또는 창작기록을 제출하지 못하여 독립적인 창작과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음. 또한 해당 업체 관계자가 분쟁 조각은 자사가 설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까지 고려하면 작품 간 독창적 표현의 높은 유사성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도 제시되지 않았음.

따라서 B 문화관광국이 건설주체인 사업에서 사건 설계의 독창적 표현을 이용한 분쟁 조각이 건설되었고, 사건 설계의 이용이 A 회사의 허락 없이 이루어졌으며 대가도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A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임.

3) 법적 책임

[요약] 실제 손실, 침해이익, 합리적 이용허락료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사건 설계의 성격과 창작가치, 침해형태 및 범위, 합리적 권리구제 비용 등을 종합하여 손실 및 합리적 비용을 합계 150,000위안으로 정함

<저작권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B 문화관광국은 A 회사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인 권리구제 비용을 배상해야 함.

A 회사는 <도시조각 예술공정 물량목록 가격산정 정액(2020년판)(城市雕塑艺术工程量清单计价定额(2020)版)>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하여 900,000위안을 청구하였음. 그러나 해당 기준이 도시조각 분야에서 통용되는 가격산정 참고기준으로서 조각설계의 창작가치를 판단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본 안건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침해행위의 성격, 지속기간, 지역적 범위 등과 함께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A 회사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을 150,000위안으로 결정함.

- A 회사가 실제 손실이나 B 문화관광국의 침해이익을 증명하지 못한 점
- 사건 설계의 합리적 이용허락료 기준도 입증되지 않은 점
- 사건 설계의 창작에는 일정한 난이도가 있으나 사건 설계의 높은 업계 인지도나 시장가치가 입증되지 않은 점
- 입찰을 통하여 낙찰자가 실제 건설을 수행한 침해형태에 비추어 B 문화관광국의 주관적 약의를 고의·중대한 침해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 <도시조각 예술공정 물량목록 가격산정 정액(2020년판)> 가격산정 기준의 조각 창작·설계비 기준과 건설공사계약에서 정한 설계비를 참고하되 사건 설계가 평면 이미지로 표현된 설계안으로서 입체 조각 제작을 위한 상세 설계까지 포함하지 않은 점
- 분쟁 조각이 이미 철거된 점

3. 판례분석

1) 평면 조각설계의 입체 구현 조각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① 판단기준

본문 판례에서 법원은 분쟁 조각과 사건 설계가 유사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먼저 사건 설계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독창적 표현을 확인한 후 그 표현이 분쟁 조각에 이용되었는지를 판단함. 법원은 사건 설계가 공공영역에 속하는 역사적 인물의 형상을 소재로 하고 있더라도 인물의 조형, 비례구조, 공간구성 등에 나타난 개성적인 선택·판단·배열은 독창적 표현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함.

② 판단방법

본문 판례에서 법원은 사건 설계와 분쟁 조각을 비교하면서 단순히 두 작품이 모두 <대당군영>이라는 역사적 소재를 사용하였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사건 설계에서 독창성이 인정된 구체적인 표현요소를 중심으로 비교함.

구체적으로 법원은 분쟁 조각의 전체 조형, 공간배치, 비례구조, 세부처리 및 예술적 스타일을 사건 설계 및 효과도와 비교하였고, 이러한 독창적 표현에서 양자가 높은 유사성을 가진다고 판단함. 한편 일부 인물의 조형 각도와 자세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인정하였으나 그러한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반 관람자의 전체적인 관찰에서는 높은 전체적 유사성이 유지된다고 봄.

법원이 전체 조형, 공간배치, 비례구조, 세부처리, 예술적 스타일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건 설계의 독창성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소재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체적인 조각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창작자의 개성적인 선택, 판단, 배열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임. 법원은 사건 설계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면서 조각의 조형, 비례구조, 공간 구도 등에 나타난 개성적 표현을 보호 대상으로 파악하였고, 침해 판단에서도 이러한 독창적 표현이 분쟁 조각에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조형, 공간배치, 비례구조, 세부처리, 예술적 스타일을 비교함.

이는 법원이 개별 인물이나 세부요소를 기계적으로 하나씩 대응시키는 방식보다는 사건 설계의 독창성을 형성하는 여러 표현요소가 분쟁 조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재현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특히 일부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 차이가 전체 조형, 공간구성 및 예술적 스타일에서 나타나는 공통성을 상쇄할 정도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③ 법적 중요성

본문 판례는 저작권 침해에서 작품 사이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동일한 소재나 주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보다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독창적 표현이 실제로 얼마나 공통되는지를 중심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특히 역사적 인물과 같이 공공영역에 속하는 소재가 포함된 작품에서는 소재 자체의 공통성과 창작자가 구체화한 조형, 비례, 배치, 구성 등의 표현상 공통성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본문 판례는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전체적인 유사성을 부정하지 않고 사건 설계의 독창성을 형성하는 여러 표현요소를 결합하여 일반 관람자의 전체적인 관찰이라는 방식으로 비교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즉 개별적인 인물의 각도나 자세가 일부 달라졌더라도 전체 조형, 공간배치, 비례구조, 세부처리, 예술적 스타일에서 보호되는 표현이 상당 부분 유지되어 있다면 침해 판단에서 그 전체적인 공통성을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줌.

2) 설계·시공 분리 구조에서 시행 주체의 저작권 침해 판단

① 판단기준

본문 판례에서 분쟁 조각을 직접 제작·시공한 주체는 B 문화관광국 자체가 아니었고, 분쟁 사

업은 설계·시공 일체형 사업으로서 공개입찰을 통하여 별도의 사업자가 선정되어 진행되었음.

그럼에도 2심 법원은 실제 분쟁 조각 제작 주체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B 문화관광국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 설계가 분쟁 사업의 시공과정에 실제로 유입·이용된 경로를 확인함.

따라서 본문 판례를 통해 법원이 사업주체의 형식적 지위만이 아니라 해당 사업주체와 보호되는 표현의 실제 유입·이용 사이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음.

② 판단방법

본문 판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본문 사건의 침해 주체를 판단하였음.

첫째, 분쟁 사업의 시행 주체와 분쟁 조각을 실제로 제작·시공한 주체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함. 분쟁 사업은 설계·시공 일체형 사업으로서 B 문화관광국이 공개입찰을 통하여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진행하였고 분쟁 조각을 직접 제작·시공한 주체는 B 문화관광국 자체가 아니었음. 따라서 법원은 B 문화관광국이 실제 제작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침해주체에서 제외하지 않고 B 문화관광국과 사건 설계의 실제 이용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존재하는지를 추가로 확인함.

둘째, 사건 설계가 분쟁 사업의 실제 시공 단계까지 유입·이용된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함. 법원의 조사 결과 A 회사 직원과의 연락을 통하여 사건 설계를 취득한 관계자로부터 다시 분쟁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사건 설계도가 전달되었고, 해당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 설계도를 기초로 분쟁 조각을 직접 시공한 사실이 확인됨. 이에 따라 사건 설계가 단순히 외부에 제공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분쟁 사업의 관계망을 거쳐 실제 시공 단계까지 전달·이용되었다는 점이 확인됨.

셋째, 법원은 이러한 사건 설계의 전달·이용경로를 B 문화관광국의 분쟁 사업상 지위와 결합하여 판단함. 법원은 B 문화관광국이 해당 관광건설사업의 건설 주체라는 점과 사건 설계가 사업 초기 관계자와의 연락을 거쳐 실제 시공 관계자에게 전달된 점을 함께 고려하여 B 문화관광국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대당군영> 설계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함.

따라서 본문 판례에서 B 문화관광국을 침해 주체로 인정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제작 주체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건 설계가 해당 사업의 관계망을 통하여 실제 시공단계까지 전달·이용되었다는 점과 B 문화관광국이 그 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해당 설계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③ 법적 중요성

본문 판례는 실제 제작자와 사업의 시행 주체가 분리되는 설계·시공 사업에서, 저작권 침해물을 직접 제작한 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시행 주체가 당연히 저작권 침해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 특히 사건 설계가 사업 관계망을 통하여 실제 시공 단계까지 전달되어 분쟁 조각에 이용된 경우에는 실제 제작자뿐 아니라 사업의 시행 주체와 보호되

는 표현의 이용 사이에 어떠한 구체적인 관련성이 존재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3자 회사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탁한 사건¹⁾에서 제3자 회사는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복제·수정하여 침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고, 피고 역시 해당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였음. 최고인민법원은 이러한 구체적인 침해행위와 함께 피고와 제3자 회사가 회사 설립, 인력 채용, 자금사용, 프로젝트 의사결정 등에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침해 소프트웨어의 개발·복제 과정에서 목표, 행위, 이익상의 연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양자의 공동침해를 인정하였음.

따라서 본문 판례는 실제 제작자와 별개의 사업 주체에 저작권 침해책임을 인정할 때 단순한 위탁·발주 관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체가 침해행위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와 상호 간의 구체적인 연계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4. 시사점

본문의 판례는 평면 설계와 입체 조각이라는 표현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호되는 독창적 표현이 이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과 사업의 시행 주체와 실제 제작·시공 주체가 분리된 경우 저작물의 유입, 이용과 사업 시행 주체 사이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확인하여 실제 침해자를 확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판례
(2026)新29民终1067号
(2021)最高法知民终51号

1) (2021)最高法知民终51号